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오현숙 의원 발의】



2020. 10. 1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62호로 2020년 10월 8일 오현숙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방접종을 추진함에 있어 무료예방접종의 대상자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 (정기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

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을 명시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제4항)

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원기간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 발생(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시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다. 입법예고 결과(2020.10.8. ~ 10.13.):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임시 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 안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무료예방접종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무료예방접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의 요청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할 경우 합병증 발생과 입원자 증가로 의료인, 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가 시급한 실정임.

- 이를 위해 서울시 사업으로 대민접촉의 빈도가 높은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에 대한 무료접종을 2020년 11월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자에 대한 무료접종 확대를 위해서는 사전에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바,

○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